

##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14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□ 제안 이유

경보통제소 및 재난관리상황실의 상황관리 요원과 안전점검기동반원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 골자

- 본청 정원 18명을 증원 : 5급 4명, 6급 이하 및 기능 14명
  - 경보통제소 - 5명 (6급 이하 및 기능 5)
  - 재난관리 상황실 - 5명 (5급 3, 6급 이하 2)
  - 안전점검기동반 - 8명 (5급 1, 6급 이하 및 기능 7)

### □ 근거 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

### □ 따로 붙임

1.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(안) 1부.
2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
3. 참고 자료 (근거 법령 내용) 1부. 끝.

##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본청 “937” 을 “955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